

수원지방법원 2021. 6. 4 선고 2020나7405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남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신아 담당변호사 권병진, 방경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정원

변 론 종 결 2021. 4. 30.

판 결 선 고 2021. 6. 4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6. 23. 선고 2019가단8028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

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약정금 청구로 바꾸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수자금으로 100,000,000원을 투자하였고, 이 사건 상가가 매각되자 피고는 2015. 12. 1. 원고의 투자금 100,000,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, 피고는 그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갑 제8, 9,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,000,000원을 투자하였다거나,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. 12. 1. 투자금 반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수자금으로 100,000,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또한, 원고는 2005. 1.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수자금 100,000,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명의를 신탁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추후 이 사건 상가가 처분되면 위 매수자금을 피고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, 이 사건 상가는 2015. 11. 17. 매각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약정에 따른 정산금 100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3, 5, 8, 9,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. 1.경 위 주장과

같은 정산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준현, 판사 김정운, 판사 김재학